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화구획은 화염 등의 확산을 방지하는 중요한 구조이나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 시 시공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방화구획의 시공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제926회 예비심사를 통해 비중요 규제로 규제심사 완료된 사항으로 법제처 심사 법체계 검토 중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단계)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3호에 따라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8조의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단계) 영 제18조의2제2항제1호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계”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우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댐퍼를 설치하는 시공을 완료한 단계